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정상천
편집: 문화공보관 심계섭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제 758 호
1980. 3.10

시보

차례

◎ 훈령

제 521 호 : 서울특별시국민(민영)주택사업계획심의회운영규정중개정
규정 3

제 522 호 :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개정규정 3

◎ 고시

제 87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 5

◎ 공고

제 62 호 : KS 표시정지처분공고 5

제 64 호 :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6

제 17 호(마포구공고) : 공인개각공고 6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훈령

서울특별시 국민(민영) 주택사업계획
심의회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
같이 발령한다.

1980년 3월 10일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

◎ 서울특별시 훈령 제 521 호

서울특별시 국민(민영) 주택사업
계획 심의회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민영주택사업계획 심의회
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
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제 2부시장이 되며 위원
은 주택국장, 산업국장, 도시계획국장,
건축국장, 수도국장, 농지국장, 하수
국장, 비상계획관이 되고 필요시 위
원장이 국장급으로 추가 위촉할 수
있다.

제 3조 중 제 1호 내지 제 9호를 각각
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민영주택사업 승인과 관련된 법
령의 종합검토
2. 건축적지 여부판단

3. 도시계획상 저장유무
4. 토지 형질변경 가능여부
5. 급수 가능여부 판단
6. 군사보호구역 지속여부
7. 쟁고 조정 및 주위건물과의
조화
8. 진입도로 연결 관계등
9. 기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
측면에서 검토

제 6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
두되 간사는 주택 행정과장이 되고
서기는 주택 행정계장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 개정규정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0년 3월 10일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

◎ 서울특별시 훈령 제 522 호

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시장 및

시장 산하 각 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기관의 보조기관이 전결토록 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 한계를 명백히 하고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,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전결방법) ① 전결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별표1 내지 별표19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. 다만,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②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.

④ 시장 또는 각 기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중요사항) 시장 산하 각 기관장의 소관사항중 다음 사항은 본청의 위임 전결부분에 준하여 시장 혹은 부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
1. 소관업무의 기본운영계획
2. 신규 이해적인 사업계획 및 시행
3. 다수 시민의 이해에 관련된 기본방침
4. 외부기관과의 시장을 대리한 업무의 협조, 동의, 계약의 체결등
5. 차관 및 기체계획
6. 청사등의 신축이전
7. 국외출장
8. 기타 중요사항

제5조(합의)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, 그 의견이 상이 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결재위반여부확인) 문서통제관은 본 규정의 전결 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전결권자의 책임)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시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758 호

시

보

1980.3.10 9-5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1.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위임전결규정
 2. 서울특별시 소방서 위임전결규정
- ※ 별표 1-19 별책

고 시

1. 건설부 고시 제 393 호 (78.12.7)로 결정고시된 당시 관내 도시 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87 호

1980.3.10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서울특별시장

○ 도로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지적승인	대	2	54	30m	220m	구로동 424-128	구로구청	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공 고

표시 정치처분 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62 호

1980.3.8

KS 표시 정치처분공고

서울특별시장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
아래와 같이 KS (한국공업 규격)

허가번호: 제 1,201 호

허가일자: 1975.11.26

제조업체명: 한일전선 주식회사

9-6 제758호 시

보

1980.3.10

대표자 : 이 용학

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
동 610-8

규격번호 : KSC 3302

품명 : 600V 비닐전선

총용등급 : 2.0 mm

처분기간 : 처분일로부터 3개월 (당시
해제공고시까지)

처분일자 : 80.3.8

처분사유 : KS 규격 미달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64호

환지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

1. 영동 1지구 (추가) 토지구획정리
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 중 일부 토
지에 대하여 민경사유가 있어 환
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 정리
사업법 제55조와 동법 제33조의
규정에 의거 14일간 일반의 공
람에 공한다.

2. 환지계획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
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미치하고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
이고 있다.

구획정리사업

나. 변경위치 : 관악구 방배동 420의
2호 일대

다. 변경면적 : 1,748.80 평

◎ 마포구 공고제 17호

공인개인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
에 의거 동장 직인 및 개인을 개인
하였기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
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0년 3월 일

마포구청장

1. 개인대상동 : 아현1동, 아현3동,
 풍덕1동, 용강동, 염리동, 합정동,
 망원동, 연남동, 성산1동
2. 사용일시 : 80.3.17.09:00
3. 개인공인인영 : 다음

1980.3.10

서울특별시장

(민경내역)

가. 사업명 : 영동 1지구 (추가) 토지

제 758 호

시

보

1980.3.10

9-7

	폐 각 인	개 각 인
인 영		
공 인 명	아현 1 동장인 및 계인	아현 1 동장인 및 계인
인 영		
공 인 명	아현 3 동장인 및 계인	아현 3 동장인 및 계인
인 영		
공 인 명	공덕 1 동장인 및 계인	공덕 1 동장인 및 계인

9-2

제 751 호

시

보

1980.3.10

폐 강 인	개 강 인
용강동장인 및 제인	용강동장인 및 제인
영리동장인 및 제인	영리동장인 및 제인
학정동장인 및 제인	학정동장인 및 제인

제 758 호

시

보

1980.3.10

9-9

	폐자인	개자인
인명		
공인명	방원동장인 및 개인	방원동장인 및 개인
인영		
공인명	연남동장인 및 개인	연남동장인 및 개인
인영		
공인명	성산1동장인 및 개인	성산1동장인 및 개인